



제1734호 2026. 3. 11. (수)

공 고

- | | |
|--|----|
|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 ○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2 |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1.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촉직 위원 정수 확대 및 당연직 규정 삭제(안 제3조)
- 연임제한 규정(두 차례만 가능) 신설(안 제4조)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회의 명칭 및 소집, 회의 개최 횟수 변경(안 제8조)
- 간사 및 서기 운영 체제 개선(안 제9조)
- 회의참석 수당, 자문료 등 지급 기준 정비(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6. 3. 11. ~ 2026. 3. 31. (20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31.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3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되”를 “하고,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전체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담당 국·소·단장이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9조의 제목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원고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표 1] <신 설>

수당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액
회의참석 수당		1회 당 100,000원
서면(Email) 자문 수당		1회당 100,000원(원고 2면 초과시 원고료 별도)
원고료	A4 용지	1면 당 13,000원 - (지급규격) ① 1면 기준 300자 또는 ②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여 비		1. 공무원인 자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별표 1 적용 2. 공무원이 아닌 자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별표 9 적용 - 별표9의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 등급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4조를 적용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u>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35인 이내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국·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u>	제3조(구성) ① <u>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	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등)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u>	제4조(임기 등) ① ----- ----- <u>하고, 두 차례만</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 ① <u>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u>	제6조(분과위원회) ① ----- ----- ----- <u>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u>

1. 에너지경제
2. 관광문화
3. 해양수산
4. 도시환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소관 분과위원장은 소관부서
실·국·소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정책자문이 필
요할 시에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
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과장
이 개최한다.

④ (생략)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
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제8조(회의) ① -----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

② 전체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
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담당 국·소·단장이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 -----

-- 간사-----.

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 주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의 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원고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목포시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현재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표창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목포시 포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재 수여하지 않는 표창장 관련 조항 삭제(제4조, 제5조제4호, 제8조제3항, 제10조)
- 공적심사 임의생략 근거 삭제 및 생략 대상 구체적으로 명시(제9조제3항)
-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마련(제11조의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및 부상환수 근거 마련(제11조의3)

3. 조례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대상(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6. 예산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6. 3. 11. ~ 2026. 4. 1.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1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다. 제출방법 : 우편, FAX(061-270-3579), 직접 방문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6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민주시민상 포함)” 을 삭제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3항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 계획에 정하는 자

제11조의3(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